

2022년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도 제1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「지방공무원법」제35조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8일

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선발예정인원

시험명	직 급	직 렬	직 류	선 예 정 인 원	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
총 계				49	
제1회 임 용 시 험	8급	간 호	간 호	49	강원도 1, 강릉 12, 동해 3, 속초 1, 삼척 1, 홍천 5, 횡성 2, 영월 2, 평창 6, 정선 8, 화천 3, 고성 5

- 임용예정기관을 '강원도'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, 강원도 소속 공무원으로 강원도 청 및 강원도청 소속 직속기관·사업소 등에서 근무합니다.
- 임용예정기관을 '시·군'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, 해당 시·군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·군청 및 소속 기관 등에서 근무합니다.

2. 시험과목

※ 전 과목 인사혁신처 출제

시험명	직 급	직 렬	직 류	시 험 과 목(제1.2차 병합시험)
제1회 임 용 시 험	8급	간 호	간 호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

3. 시험방법

가.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(과목별 20문제, 4지 택1형)

시험명	직 급	시험시간	비 고
제1회 임용시험 (공개경쟁)	8급	100분 (10:00 ~ 11:40)	5과목

나. 서류전형 : 응시자격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

다.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

라. 합격자 결정방법 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

※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합니다.

4. 문제출제

가. 제1회 임용시험의 모든 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하는 문제로 시험문제는 **공개**하며,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

시험명	비공개 대상 과목
제1회 임용시험 (공개경쟁)	모든 과목 공개 대상(5개 과목) (국어, 영어, 한국사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)

5. 응시 자격

가. **응시결격사유** 등 :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법」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※ **적용기준일** :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

< 지방공무원법 제31조 : 결격사유 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 지방공무원법 제66조 : 정년 >

1.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2.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<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: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>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: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>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

1) 도일괄 구분모집, 강원도, 춘천시, 원주시, 강릉시 *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

- 2022. 1. 1. 이전부터 최종시험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(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.)
- 2022. 1. 1.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2) 동해시, 태백시, 속초시, 삼척시, 홍천군, 횡성군,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,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

-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시·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조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.

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, 시·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,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,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합니다.

다. 응시연령

시험구분	직 급	응시연령	해당 생년월일
제1회 임용시험(공개경쟁)	8급	18세 이상	2004.12.31. 이전 출생자

라.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(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)

시험명	직 급	직 렌	직 류	해당 학력·자격(면허)증
제1회 임용 시험	8급	간 호	간 호	조산사, 간호사

○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

-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·면허증은 **필기시험 합격자**에 한하여 확인합니다.
-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**최종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**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.
- ※ 자격증 소지(유효)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**자격증 발급(취득)일**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.

6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

시 험 명	응시원서 접수 기간	시 험 구 분	시험장소 공 고 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제1회 임용시험 (공개경쟁)	2. 21. (월) ~ 2. 25. (금) (취소마감: 2.28.(월) 24:00)	필 기	4.20.(수)	4.30.(토)	5.12.(목)
		면 접	5.12.(목)	5.19.(목)	5.31.(화)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.
- ※ 시험장소 공고,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(<http://www.provin.gangwon.kr>) 도정마당-시험정보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※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,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할 예정입니다.
- ※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,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7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하여 접수
 -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
(문의전화☎ : 1522-0660 / 문의시간 : 09:00~18:00) *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접수시간 : 접수기간 내 24시간(단, 접수 시작일은 09:00부터, 접수 마감일은 18:00까지)
- 기 타 : 응시수수료(8·9급 5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.카드결제, 계좌이체비용)이 소요됩니다.
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
나. 응시수수료의 환급

- 일부환급
 -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 금액
- 전액환급
 -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
 -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

다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, 중복(복수)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 - ※ 또한,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·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할 수 있으며,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예정기관(지역)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.
-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-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합니다.(해상도 100dpi 이상, 크기 3.5cm × 4.5cm 기준)
 - ※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등록
-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.
-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(장애)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장애유형(시각, 뇌병변, 지체, 청각 등)별 및 임신부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을 [붙임 1]「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」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8. 양성평등 채용목표제

가. 적용대상

- 모집단위(임용예정기관 및 직급·직류, 구분모집)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 임용시험
 - ※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음

나. 채용목표

-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%(인원 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,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 올림함)

다. 실시방법

-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% 이상 득점하고,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-3점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.
 - ※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(性)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.
 - ※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「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, 행정안전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is.go.kr>)-정책자료-법령정보-훈령/예규/고시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9. 가산점 적용

가.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.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.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
나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 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의사상자 등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)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제34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56조에 따라,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3%)을 가산합니다.
-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- ※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사회 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.

라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공통적용 가산점 제도(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등)는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-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1회 임용시험(공개경쟁)은 직렬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·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세부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 **필기시험 전일**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**(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됨)** 따라서,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/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셔야 하며,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가산점 등록(수정)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**필기시험일 전일**까지입니다.
 - ※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의 경우는 반드시 가산비율과 자격번호(보훈번호, 증서번호)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 - ※ 가산자격증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, 자격번호(보훈번호, 증서번호)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.
-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[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]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.

9.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

-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자격미비자의 응시, 거주지 제한 미확인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,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,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(경력, 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-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제1회 임용시험(공개경쟁)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의 40%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순입니다.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‘**최종시험일**’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의미합니다.
-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해당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(전보)될 수 있습니다.

- 전출제한 5년 : 춘천시, 강릉시, 동해시, 태백시, 속초시, 삼척시, 홍천군, 횡성군,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, 철원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
- 전출제한 3년 : 원주시

-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, 컴퓨터용 흑색사인펜, 수정테이프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(유의)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하며,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합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(033-249-2227, 2218, 2548)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(<http://www.provin.gangwon.kr>)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.